

# 보수 규칙

제정 2021. 06. 09.

개정 2021. 12. 21.

개정 2023. 11. 23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남양주시체육회 직원보수규정(이하“규정”이라한다)에 의거 소속직원의 “보수 및 퇴직금” 지급기준을 정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업무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1. 12. 21.)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칙은 본회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의한 본회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 한다.

## 제2장 시간외 근무

**제3조(근무시간)**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

② 점심시간은 12:00부터 13:00까지로 한다.

③ 회장은 직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**제4조(시간외 근무수당)**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제3조에 의한 근무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.

**제5조(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)** 근로기준법 변동에 따라 준용한다. (개정 2021. 12. 21.)

**제6조(지급시간수의 계산)** ① 삭제 (2021. 12. 21.)

② 삭제 (2021. 12. 21.)

**제7조(시간외 근무 명령서·대장 작성 및 지급)**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초과근무 시 사전에 “별지1서식“의 결재를 득하고, 초과근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“별지1서식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, 총무팀 회계담당자는 “별지2서식”에 의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.

### 제3장 연가보상비

**제8조(연가일수)** ① 직원의 휴가는 연가·공가·병가·특별휴가로 구분한다.

②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의 연가일수는 규정에 의거 일수를 계산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연가는 당해연도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. 다만, 본회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9조(연가보상비)** 직원에게 주어진 연가로서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연가일수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10조(지급액)** 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② 당해연도 승진, 강임, 전직, 승급 등으로 직급(직제)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통상임금으로 하되,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, 휴직 기타의 사유로 통상임금액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통상임금액으로 한다.

**제11조(지급액의 계산)** 근로기준법 변동에 따라 준용한다. (개정 2021. 12. 21.)

**제12조(지급시기)** 당해연도 12. 31.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.

### 제4장 가족수당 (삭제 2021. 12. 21.)

**제13조(가족수당)** 삭제 (2021. 12. 21.)

제14조(기본요건) 삭제 (2021. 12. 21.)

제15조(가족수당) 가족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준용한다. (개정 2021. 12. 21.)

제16조(수당지급 및 소멸시기) ① 삭제 (2021. 12. 21.)

② 삭제 (2021. 12. 21.)

## 제5장 삭제 자녀학비보조수당 (삭제 2021. 12. 21.)

제17조(자녀학비보조수당) ① 삭제 (2021. 12. 21.)

② 삭제 (2021. 12. 21.)

제18조(기본요건 및 지급방법) ① 삭제 (2021. 12. 21.)

② 삭제 (2021. 12. 21.)

③ 삭제 (2021. 12. 21.)

④ 삭제 (2021. 12. 21.)

## 제6장 수당 (신설 2021. 12. 21., 2023. 11. 23.)

제19조(수당구분) 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. (개정 2023. 11. 23.)

1. 상여수당 (신설 2023. 11. 23.)
  - 가. 근속수당 (신설 2023. 11. 23.)
2. 가계보전수당 (개정 2023. 11. 23.)
  - 가. 가족수당 (신설 2023. 11. 23.)
3. 초과근무수당 (개정 2023. 11. 23.)
  - 가. 시간외근무수당 (신설 2023. 11. 23.)
  - 나. 야간근무수당 (신설 2023. 11. 23.)
  - 다. 휴일근무수당 (신설 2023. 11. 23.)
4. 실비변상 등 (개정 2023. 11. 23.)

- 가. 정액급식비 (개정 2023. 11. 23.)
- 나. 직급보조비 (개정 2023. 11. 23.)
- 다. 명절휴가비 (개정 2023. 11. 23.)
- 라. 연가보상비 (신설 2023. 11. 23.)

## 제7장 퇴직금 (신설 2021. 12. 21.)

제20조(퇴직금) 본조 삭제 (2023. 11. 23.)

제21조(지급기준) ① 삭제 (2022. 11. 23.)

- ② 삭제 (2023. 11. 23.)
- ③ 삭제 (2023. 11. 23.)
- ④ 삭제 (2023. 11. 23.)
- ⑤ 삭제 (2023. 11. 23.)
- ⑥ 삭제 (2023. 11. 23.)

제22조(근속연한 계산) 삭제 (2023. 11. 23.)

제23조(근속결격) 삭제 (2023. 11. 23.)

제24조(수령권자) 삭제 (2022. 11. 23.)

제25조(지급일) 삭제 (2023. 11. 23.)

## 제8장 지원수당 (신설 2023. 11. 23.)

제26조(지원수당)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국장에게 지급한다. (신설 2023. 11. 23.)

제27조(기본요건 및 지급방법) 상근직 사무국장에게 지급되며, 겸임 또는 비상근

직일 경우 지급할 수 없다. 또한 시간 외 근무수당과 중복지급하지 아니한다.  
(신설 2023. 11. 23.)

**제28조(지급액)** 예산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한다. 해당 예산 지원 종료 시 지급하지 아니한다. (신설 2023. 11. 23.)

**제29조 (수당지급 및 소멸시기)** ① 사무국장 임용일로부터 발생하며, 질병, 사망 등 지급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.  
② 인사상 임용행위(신규채용, 퇴직, 면직 등)로 인한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는 임용(발령)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 
(본조신설 2023. 11. 23.)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 (신설 2023. 11. 23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(신설 2023. 11. 23.)

## 수당 지급 기준표 (제19조 관련)

구 분		지급율 또는 지급금액
상여수당	근속수당	· 지도자 1. 5년 이상 월 50,000원 2. 5년 미만 월 30,000원
가계보전수당	가족수당	1. 배우자: 월 4만원 2. 자녀 가. 첫째 자녀: 월 3만원 나. 둘째 자녀: 월 7만원 다. 셋째 이후 자녀: 1명당 월 11만원 3.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: 1명당 월 2만원
초과근무수당	시간외근무수당	· 통상임금 × 1.50/209 × 시간
	야간근무수당	
	휴일근무수당	
실비변상 등	정액급식비	· 월 140,000원
	직급보조비	· 4급 월 400,000원 · 5급 월 250,000원 · 6급 월 185,000원 · 7급 월 180,000원 · 8급 월 175,000원 · 9급 월 175,000원 · 지도자 월 100,000원
	명절휴가비	1. 직원 가. 설 기본급x60% 나. 추석 기본급x60% 2. 지도자 가. 설 500,000원 나. 추석 500,000원
	연가보상비	· (통상임금 × 1.0/209) × 8시간 × 미사용 연가일수

※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



